

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

-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를 동결 -
-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-

< 요약 본 >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10월 29일(화)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,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.9182% (건강보험료 대비 12.95%)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.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,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.

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.93% 인상된다. 특히,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.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.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,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'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(2.1: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.37%)했다.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(2.3: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.12%)할 계획이다.

복지부는 지난 「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(‘23.8.)」과 「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(‘24.3.)」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.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▲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▲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▲재택의료 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. 더불어, ▲주·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, ▲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.

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“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동결을 의결하였다” 라며, “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,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 상 세 분 >

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

□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.9182%로 결정되었다.

-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,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.95%를 적용하게 된다.

<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>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
소득대비 보험료율	0.5497%	0.6837%	0.7903%	0.8577%	0.9082%	0.9182%	0.9182%
(인상률)	19.37%	24.38%	15.59%	8.53%	5.89%	1.09%	-
건보료대비 보험료율	8.51%	10.25%	11.52%	12.27%	12.81%	12.95%	12.95%
(인상률)	15.30%	20.45%	12.39%	6.51%	4.40%	1.09%	-

□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*을 고려한 결과로,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하였다.

* '24년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4.9조 원(4.8개월분) 보유 예상('24.9. 기준)

-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,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.

2.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

□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.93%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.

○ 특히,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(기존 입소자 2.3명당 1명 → 개선 입소자 2.1명당 1명)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(7.37%)이 반영되었다.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「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(’23~’27)」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.

○ 한편,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.3: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(’25.1.1.~’26.12.31. 예정)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제로 운영*될 계획이다.

* 2.1: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☞ 2.1:1 수가 지급(’24년 대비 7.37% 인상)

2.3: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☞ 2.3:1 수가 지급(’24년 대비 2.12% 인상)

<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(단위 : %, 노인요양시설 2.1:1 기준) >

평균	요양시설	공동생활가정	주야간보호	단기보호	방문요양	방문목욕	방문간호
3.93	7.37	2.07	2.12	2.08	1.89	2.14	2.34

□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,240원에서 90,450원으로 인상되며,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,500원이고,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,700원이 된다(본인부담률 20% 기준, 붙임 참고).

○ 재가서비스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,700원 ~ 23만 6,500원 늘어나게 된다.

< ’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(단위:원) >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’24년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’25년 (전년대비)	2,306,400 (+236,500)	2,083,400 (+213,800)	1,485,700 (+29,900)	1,370,600 (+28,800)	1,177,000 (+25,400)	657,400 (+13,700)

붙임

'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

〈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〉

(단위 : 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'24년 한도액	2,069,900	1,869,600	1,455,800	1,341,800	1,151,600	643,700
'25년 한도액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인상률	11.43%	11.44%	2.05%	2.15%	2.21%	2.13%

〈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〉

① 노인요양시설

(단위 : 원)

등급	'24년 수가	'24년 본인부담	'25년 수가	'25년 본인부담
1	84,240	16,848	90,450	18,090
2	78,150	15,630	83,910	16,782
3,4,5	73,800	14,760	79,240	15,848

② 공동생활가정

(단위 : 원)

등급	'24년 수가	'24년 본인부담	'25년 수가	'25년 본인부담
1	71,010	14,202	72,480	14,496
2	65,890	13,178	67,250	13,450
3,4,5	60,740	12,148	62,000	12,400

3.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

-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.
- 우선,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.
- 중증(장기요양 1·2등급)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*하고,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* (1등급) 기존 2,069,900원 → 인상 2,306,400원
(2등급) 기존 1,869,600원 → 인상 2,083,400원
- 또한,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‘장기요양 가족휴가제’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(‘24년 10월→’25년 11월), 종일방문요양(12시간, ‘24년 20회→’25년 22회)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.
-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서비스, 재택의료센터,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.

- ▶ **통합재가서비스** :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 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(‘24. 120개소 → ’25. 225개소 목표)
- ▶ **재택의료센터** :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·간호사·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의료-요양 통합서비스 제공(‘24. 95개소 → ’25. 150개소 목표)
- ▶ **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** :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·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,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 (‘24. 5,400명 → ’25. 8,100명 목표)